

『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써 심야·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,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이에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 조직 및 구성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방범대 및 연합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방범대 및 연합대의 행정지도, 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방범대 및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지역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·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되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